#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4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전재수·김동아·김재원

이건대 • 전진숙 • 이소영

신영대 • 박선원 • 서삼석

송기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전단 중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간행물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로,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을 "도서·정기간행물·신문·공연사용분"으로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을 "도서·정기간행물·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정기간행물 구입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정기간행물 구입에 관한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		
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	<u>2</u>	
<u>025년 12월 31일</u> 까지 재화나	028년 12월 31일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		
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		
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 4. (생 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 ~ 4.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4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 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 하거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 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 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 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 · 신문 · 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٦L		
<b>∕</b> [.		
		<u>간 행</u>
	물 및 「잡지 등 정기	<u> 간행</u>
	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	기간
	행물(「출판문화산업	<u>진흥</u>
	법」 제2조제8호에	<u> 따른</u>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	<u>})</u>
	<u>도서 • 정기간행</u>	물•
	<u>신문·공연사용분</u>	

	<u>도</u> 서 •
	<u>정기간행물·신문·공연사</u>
	용분
	<u>.</u>
나. (생 략)	나.(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생 략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